

결 정

의 결 번 호 제9회 지선-자심41

언 론 사 주식회사 서천신문(서천신문)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81
대표이사 윤상규

심의대상기사 2026년 5월 14일자 5면 「진보교육감 후보 이병도 22% ‘1위’」 제하의 기사

- 주 문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사실 게재를 명한다.
2. 주식회사 서천신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행하는 서천신문 5면에 **[별지]**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은 심의대상기사의 부제목(심의대상기사 중 <후보 능력과 전문성, 도덕성 및 청렴성 ‘우위’ 분석> 부분)과 같은 활자 및 크기로,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및 크기로 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충남교육감)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기하지 아니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면서 타 후보자에 대한 조사결과는 언급하지 아니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2호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4.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박 김 홍 래
중 종 은 태
은 은 기 천
기 기 형 철
형 형 보 연
보 보 승 진
승 승 혜 진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별지]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2. 내용 : 본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교육감에 출마 예정인 특정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기하지 아니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여 (2026년 5월 14일자 5면 「진보교육감 후보 이병도 22% '1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2호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3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선거기사로서 객관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경우
2.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고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한 경우
3.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 발언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달하거나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
4.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경우

제8조(여론조사 보도) 여론조사 관련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일전 6일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실시한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2.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또는 축소·과장하여 해설한 경우
3.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기하지 아니하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
4. 여론조사결과를 조사의 전제조건이 현저히 다른 상황에 대하여 임의로 적용한 경우
5. 여론조사결과를 그래프, 그림, 표 등의 형태로 보도하면서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여 나타낸 경우

결 정

의 결 번 호 제9회 지선-자심42

언 론 사 주식회사 내외뉴스통신(내외뉴스통신)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 1149호
대표자 사내이사 김광탁

심의대상기사 [별지 1] 기재

- 주 문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를 명한다.
2. 주식회사 내외뉴스통신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내외뉴스통신 홈페이지(<https://www.nbnnews.co.kr/>) 정치면 상단에 24시간 동안 [별지 2] 경고결정문의 제목(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결정 알림)을 고정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2] 경고결정문의 제목과 본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단, 보도문 제목과 본문의 활자 및 크기는 심의대상기사 제목과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24시간 게재 후에는 해당 보도문을 언론사 DB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하남시의원)와 관련하여, 기사의 내용과 편집에 있어 특정 후보자의 동향 및 공약 등을 홍보 이미지와 함께 여러 차례 부각 보도한 반면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보도는 다루지 않아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로 형평성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2항 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1호,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4.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박	홍	래
	부위원장	김	중	국
	위원	박	은	태
	위원	한	기	천
	위원	김	형	철
	위원	이	보	연
	위원	장	승	진
	위원	정	혜	진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별지]

심의대상기사 목록

1. 2026년 3월 17일자 정치면 「국민의힘 하남시의원 “미사 상권 살리기”...청년창업 중심 3대 정책 제시」 제하의 기사
2. 2026년 3월 23일자 정치면 「김희중 하남시의원 예비후보, ‘시의원 평가보증제’ 도입 공약...“매년 의정활동 주민 평가 받겠다”」 제하의 기사
3. 2026년 4월 3일자 정치면 「김희중 하남시의원 예비후보, 미사지구 금빛마을 주차난 해결·경로당 신설 검토」 제하의 기사
4. 2026년 4월 13일자 전국면 「김희중 하남시의원 예비후보, 미사지구 선거사무소 개소...200여 명 참석 ‘성황’」 제하의 기사
5. 2026년 4월 22일자 정치면 「“미사의 완성은 교통과 교육”...김희중, 하남시 다선거구 시의원 도전」 제하의 기사
6. 2026년 4월 23일자 정치면 「김희중 하남시의원 예비후보, 미사 4권역 생활밀착형 공약로드맵 발표」 제하의 기사
7. 2026년 4월 29일자 정치면 「김희중 하남시의원 예비후보, 미사 주민 면담 통해 지역 밀착 공약 보완 나서」 제하의 기사
8. 2026년 5월 11일자 정치면 「김희중 하남시의원 후보 “9호선 하남 연장 더 이상 지연 안 돼”...분리발주·수익계약 검토 촉구」 제하의 기사
9. 2026년 5월 18일자 정치면 「김희중 하남시의원 후보 “미사 청년 주거비 반값 시대 열겠다”...오피스텔 관리비 인하 공약 발표」 제하의 기사
10. 2026년 5월 24일자 정치면 「김희중 하남시의원 후보, ‘AI 구독료 지원’ 공약 발표...“청년 디지털 경쟁력 강화”」 제하의 기사
11. 2026년 5월 25일자 정치면 「김희중 하남시의원 후보 “미사 현안 해결할 생활밀착형 시의원 되겠다”...9호선·교육특구 공약 제시」 제하의 기사
12. 2026년 5월 27일자 정치면 「김희중 하남시의원 후보, ‘미사-강동 광역교통 One-Pass 공동권역’ 공약 발표」 제하의 기사
13. 2026년 5월 27일자 정치면 「‘미디어하남’ 운영한 김희중...“현장 뛰며 들은 주민 목소리 정치로 풀겠다”」 제하의 기사
14. 2026년 5월 28일자 정치면 「김희중 하남시의원 후보 ‘미사 생활정치’ 전면 배치...교통·교육·상권 공약 집중」 제하의 기사

경고결정문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결정 알림
2. 내용 : 본 뉴스통신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하남시의원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동향 및 공약 등을 홍보 이미지와 함께 여러 차례 부각 보도한 반면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보도는 다루지 않아 (2026년 3월 17일자 정치면 「국민의힘 하남시의원 “미사 상권 살리기”...청년창업 중심 3대 정책 제시」 등 14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2항 제1호,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결정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② 선거기사의 편집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리적 근거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7조(일반 선거기사) 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사의 내용 및 편집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부각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논평,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 또는 홍보 이미지(명함, 포스터, 출판물 등)를 그대로 게재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선거기사의 편집 및 배열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확대, 과장, 누락, 축소한 경우

5.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 간의 대담, 토론을 보도하면서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의견이 다른 후보자나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6.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과 다르게 축소·과장 또는 왜곡된 경우
7.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경우, 또는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경우
8.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경우
9.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경우

결정

의결번호 제9회 지선-시심6

시정요구인 정철원
전남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용응규, 정지웅, 김도근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담양곡성타임스(담양곡성타임스)
전남 담양군 담양읍 깊은실길 18, 2층
대표이사 한명석

심의대상기사 2026년 5월 26일자 1면 「“인물로 선택해달라던 정철원 후보의 민낯”」 제하의 기사

주 문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발행하는 담양곡성타임스 1면에 **[별지 1]** 반론보도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고, 2면에 **[별지 2]**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심의대상기사의 소제목(심의대상기사 중 ‘여중생 성폭행 연루 의혹, 건설회사 차명소유 의혹 밝혀야’ 부분)과 동일한 활자 및 크기로,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과 동일한 활자 및 크기로 하여야 한다.

신 청 취 지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위적으로 **[별지 3]**의 정정보도문 및 예비적으로 **[별지 3]**의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을 요구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시정요구인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있고,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에게 답변을 요구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답변이 왔다면서 이 의혹들을 정리하는 형태로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고교 시절 여중생 성폭행 연루 의혹이나, 1990년대 티켓다방을 운영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건설회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해당 회사의 주식을 모두 매각하여 전혀 관련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피시정요구인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시정요구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정요구인과 경쟁 관계에 있는 특정 후보의 공약이나 선거 일정 등은 다수의 기사들을 통해 자세하게 보도하면서 시정요구인에 대해서는 의혹제기와 관련한 기사를 연속적으로 보도하는 등 피시정요구인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었고, 이미 관련 기사들이 유권자들에게 공유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주위적으로 정정보도문 및 예비적으로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을 구하였다.

그러나 피시정요구인은 위 의혹들과 관련하여 복수의 취재원과 인터뷰를 진행한 후 보도한 것이고, 건설회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표 C씨와 어떠한 관계인지를 질의한 것인데 이와 관련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타 후보와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시정요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인의 비협조적인 상황 속에서도 균형있게 보도하기 위해 시정요구인과 관련한 보도를 다수 하였다면서 시정요구인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게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공직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적격 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후보자에게 위법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나, 의혹의 당사자인 후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2. 20.자 선고 2001도6138 판결 등 참조).

시정요구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게재의 경우 양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보도에 언급된 사실적 주장에 대한 허위 사실 여부 내지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가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정보도문 게재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할 것이다.

다만 피시정요구인은 심의대상기사에서 ‘복수의 주민들을 취재한 결과를 모두 사실로 판단하였다’고는 하나, 이를 사실이라고 판단하기에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나 근거가 미약한데 반해 보도의 내용이 단정적이고, 의혹의 당사자인 시정요구인의 입장이 기사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다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해당 의혹들은 선거에 관해 유권자들로 하여금 시정요구인에 대한 여론 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정요구인의 명예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하면 심의대상기사는 시정요구인 및 여타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유권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및 공정한 여론 형성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반론보도문 게재와 함께 주의사실 게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6항, 제8조의2 제6항,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4.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박종은
김박한
김기형
김보승
김정
래국태
천철연
진진진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 내용

1. 제목 : [반론보도] <“인물로 선택해달라던 정철원 후보의 민낯”> 관련
2. 내용 : 본 신문은 지난 5월 26일자 1면 <“인물로 선택해달라던 정철원 후보의 민낯”> 이라는 제목으로 정철원 후보가 고교시절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퇴학당했으며, 1990년대 담양에서 티켓다방을 운영하였으며, 건설회사의 차명소유 의혹 등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철원 후보는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고, 1990년대 티켓다방을 운영한 사실도 없으며, 2014년경 금성건설 주식을 모두 매각하여 해당 건설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2. 내용 : 본 신문은 지난 5월 26일자 지면 기사를 통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담양군수에 출마한 정철원 후보자를 검증하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는 제기된 의혹을 사실로 판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해당 후보자나 여타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주의 결정을 내렸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3]

시정요구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

1. 정정보도문

가. 제목 : “인물로 선택해달라던 정철원 후보의 민낯”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2026. 5. 26.자 1면에 “인물로 선택해달라던 정철원 후보의 민낯” 라는 제목으로 정철원 후보가, 고교시절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퇴학되었으며, 1990년대 담양에서 티켓다방을 운영하였으며, 금성건설의 실소유주라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으나, 정철원 후보가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1990년대 티켓다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으며, 정철원 후보가 2014. 경 금성건설 주식을 모두 매각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2. 반론보도문

가. 제목 : “인물로 선택해달라던 정철원 후보의 민낯” 관련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2026. 5. 26.자 1면에 “인물로 선택해달라던 정철원 후보의 민낯” 라는 제목으로 정철원 후보가, 고교시절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퇴학되었으며, 1990년대 담양에서 티켓다방을 운영하였으며, 금성건설의 실소유주라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철원 후보는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으며, 1990년대 티켓다방을 운영한 사실도 없으며, 정철원 후보가 2014. 경 금성건설 주식을 모두 매각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고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다고 밝혀 왔습니다.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⑥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⑥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심의·의결)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1. 삭제 <2017.2.3.>
2.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3. 경고결정문 게재
4. 주의사실 게재
5.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② 선거기사의 편집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리적 근거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7조(일반 선거기사) 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사의 내용 및 편집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부각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논평,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 또는 홍보 이미지(명함, 포스터, 출판물 등)를 그대로 게재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선거기사의 편집 및 배열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확대, 과장, 누락, 축소한 경우
5.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 간의 대담, 토론을 보도하면서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의견이 다른 후보자나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6.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과 다르게 축소·과장 또는 왜곡된 경우
7.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경우, 또는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경우
8.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경우
9.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경우